최저임금 미만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

귀 사에서 퇴사한 근로자 (　　)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여 고용보험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요청하오니,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퇴직 근로자	성 명		생 년 월 일	
	주 소			
	퇴직 당시 근무 부서			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상기인의 현재의 업무내용 및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세요. (구체적으로 기재)	☐ 업무 내용 : ☐ 출퇴근 시간
2. 상기인과 최초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(근무 시간 및 급여)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세요.	☐ 근무 시간: ☐ 급여:
3. 귀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	☐ 예, 알고 있었습니다. (　　) ☐ 아니오, 알지 못했습니다. (　　)
4. 상기인과의 근로계약(최저임금 미만) 및 퇴직과 관련하여 귀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재해주세요.	

* 귀사가 기재하신 상기 내용은 관할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이직자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오며, 차후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형사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.

20　년　　월　　일

작성자 직위 :

작성자 성명 :　　(서명)

사업장 명 :　　(직인)

★ 추가 첨부 서류: ① 퇴직일 기준 직전 1년간 급여명세서
② 해당 기간(퇴직일 기준 직전 1년)의 근로자의 급여 계좌 이체 거래 내역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16조, 제118조에 의거,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